

一罰百戒

一罰百戒
정부원 유작



김우석 건설부 장관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회의에서
밝혀

부실시공 업체 및 관련공무원 유착 一罰百戒

지난 10월 21일에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함으로써 공공구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29일 과천 정부청사 회의실에서 김우석 건설부 장관을 비롯하여 대한설비공사협회 등 8개 협회 단체장 및 건설사 대표들이 참석,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대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김우석 건설부 장관은 「성수대교 상판붕괴사고는 연초부터 추진해온 부실방지 정책이 물거품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그 원인이 업체들의 책임의식 결여와 건설공무원의 복지부동 자세 등 관리책임자의 안일한 자세에 있음을 지적하고 앞으로 「부실시공에 관련된 기업체나 기술자는 영원히 건설업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一罰百戒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우석 장관은 「건설업체 대표들이 직접 나서서 현장위주의 시공 및 안전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건설부, 건설재해예방 종합대책 마련

건설부는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충분히 책정하는 대신에 품질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철저한 감독을 실시하겠다는 건설재해예방 종합대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다음의 내용중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시급성을 감안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정할 방침이다.

■ 기본방향

최근 강력한 부실공사 추방운동으로 성실시공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발생,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시는 대형 건설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한다.

(①) 교량, 지하철, 철교, 터널 등 시설물에 대해 일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시설물에 대하여는 응급조치를 시행한다.

② 부실공사의 재발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 시설물 점검 및 응급조치 시행

국도와 고속도로의 교량, 터널에 대하여는 매년 점검해 오고 있으나 이번에는 직접 건설한 시공자와 설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해 위험한 교량과 터널에 대하여는 통행제한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금년부터 본격 추진하기 시작한 위험 교량의 개보수사업에 대하여는 앞으로 최대한의 예산을 배정하여 조기에 완료할 방침이다.

지방도에 대하여도 시·도가 전문가와 함께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교량의 보수를 위해 지방비 기채가 필요한 경우 공공기금에서 지원토록 한다.

철도, 해운, 항공, 공로에 대하여도 교통부 주관으로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일제 안전점검을 시행중이다.

도로와 교량 파손의 주범인 과적차량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경찰 협조를 받아 과적이 빈발하는 지역과 업체를 특별 단속하고, 국방부와 협조하여 공익근무요원을 과적차량 검문소에 투입할 방침이다.

최근 차량의 대형화추세 등을 감안하여 앞으로 주요 교량은 모두 1등교(총중량 43톤)로 설계할 방침이다.

■ 부실방지와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부실 관련자에 대한 처벌 강화]

앞으로 공사현장에 대한 불시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부실 건설업체나 관련기술자는 업계에서 절대로 살아 남을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히 정립, 이를 위하여 부실과 관련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상대적으로 제재가 미흡한 설계 및 감리자에 대하여도 시공자에 대한 벌칙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한다.

	설계자	감리자
현 행	제재규정 없음	2년 이하 징역(벌금 1천만원)
개 정	5년 이하 징역(벌금 5천만원)	5년 이하 징역(벌금 5천만원)

성수대교 붕괴사고 현장.
지난 10월 21일 성수대교의 5번과 6번 교각사이의
상판 48m가 무너져 내려 많은 사상자를 냈다.

특히 인명사고 등 공중에 위해를 끼친 경우에는 법정한도내에서 최대한의 형벌과 행정 제재를 부과하며, 부실과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기술자 뿐만 아니라 업체와 대표자까지도 엄단하는 양벌규정을 도입한다.

경미한 제재라도 누적되면 가중처벌되도록 조치하고, 업체별·개인별 카드(전산화)를 작성하여 끝까지 추적 관리해 건설업체인 경우 시정명령이 누적되면 영업정지하고 영업정지가 누적되면 면허를 취소시킨다. 또한 기술자인 경우에는 경고처분이 누적되면 업무를 정지시키고 업무정지가 누적되면 자격을 취소한다.

[설계 및 감리제도]

부실시공의 기초가 되는 설계를 내실화 하기 위하여 교량 등 특수 구조물에 대한 중앙 설계심의를 강화하고 설계용역의 부실여부도 철저히 점검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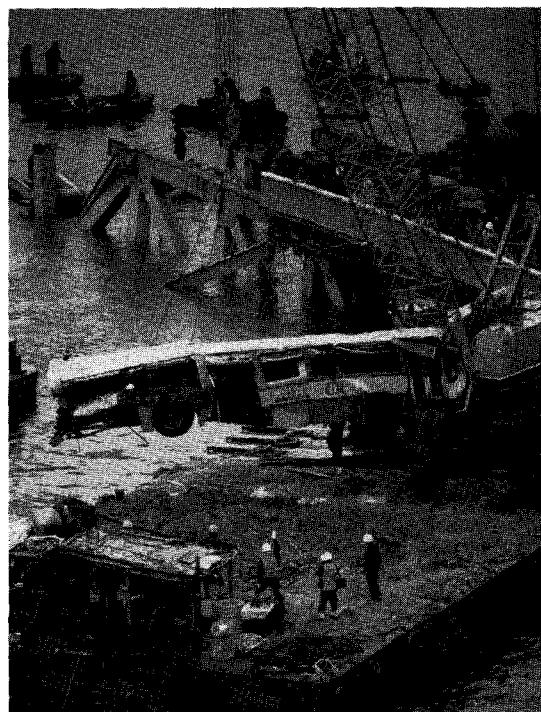
부실방지의 핵심인 공사감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교량, 터널 등 주요공정은 50억 원 미만도 책임감리를 실시하고 감리비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되 감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부실감리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등 엄격히 제재한다. 97년에 예정된 감리시장개방 이전에라도 55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외국 감리회사의 참여를 적극 허용한다.

[입찰제도 개선]

저가 입찰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자격사전심사(PQ)대상을 현행 100억원에서 55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저자가 낙찰제를 유지하면서 특수대형공사에 대하여는 기술능력, 공법, 품질관리능력 등을 함께 심사(최적격 낙찰제)할 방침이다.

[불법하도급 근절 등]

하도급 계열화와 부대입찰제를 확대 실시하고 관계기관합동으로 불법하도급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충분한 공사비 확보를 위해 95



년부터 노임단가를 현실화하며 특수구조물에 대한 턴키와 대안입찰을 확대한다.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법적장치 마련]

현재 각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이 없어 사후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노정(露呈)되고 있다.

이번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설계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는 기준과 절차를 법정화할 방침이다.

현재 시설물의 설계시에는 착공부터 준공 까지에 필요한 사항만 정하고 사후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앞으로는 교량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는 준공후 유지 관리에 필요한 기술, 장비, 인력 및 연차별 소요경비 등을 설계시에 과학적으로 산정하여 제시토록 의무화하는 등 설계시 사후 유지관리 개념을 도입한다.

현재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사업비 개념으로 편성되어 매년 예산사정에 따라 삭감 조정되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 주요

부실시공 업체 및 관련공무원 유착 一罰百戒

특수시설물중 사전에 유지관리비의 책정이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는 일정 기준에 따라 예산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시설물 유지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면허기준을 새로이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자와 장비 등 제반요건을 엄격히 규정 관리함으로써 전문적인 유지보수업체를 육성한다.

교량과 터널 등 특수구조물에 대하여는 앞으로 하자보수기간(10년) 만료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부실시공 등 문제가 발견되면 하자보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특수구조물에 대한 시공업체의 책임을 강화한다.

교량 등 특수구조물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외부전문기관에 의해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총리실에 「중앙안전점검통제단」을 설치 운영한다.

시설물 안전진단을 보다 철저히 시행하기 위하여 공신력과 전문성을 함께 갖춘 「시설안전 관리공단」의 설립을 검토한다.

우리 협회,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 등 제도개선 건의

한편 이날 회의에서 우리 협회는 적정가격 공사수주와 성실시공 의식개혁 확산을 위해 저가수주와 저가하도급 강요방지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기능인력 대우와 작업환경 개선 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의식개혁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부실추방에 대한 우리 협회의 실적과 평가에 대한 보고 내용이다.

■ 기본목표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는 기획,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종합적인 측면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실제로 공사현장에서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우리 설비공사업계는 부실시공방지를 위하여 공사수주환경 개선, 기능인력의 의식개혁, 기술능력 배양을 기본으로 하는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① 건설공사는 주문제작에 의하여 건설되므로 적정공사비 투입이 필수적이며, 공사수주에 있어서 과당경쟁에 따른 저가수주를 지양하고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계도한다.

② 정밀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는 현장시공도 작성이 필요하므로 이에따라 현장 시공도 작성 경비를 품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또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공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③ 불량자재를 건설현장에서 추방할 수 있도록 우리 협회에서는 자재 전시장을 개설하였으며 앞으로 자재 시험소를 설립 운영하여 설비자재는 설비공사협회에서 인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④ 회원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부실시공에 따른 벌칙강화와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설명하여 부실공사방지에 협조하여 줄 것을 계도하고 현장 기능인력에 대하여도 매일 현장 단위별로 성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도록 계몽한다.

⑤ 선진외국과 신공법을 소개하고 공장 등을 견학시켜 신공법에 의한 우수시공으로 설비공작물의 수명 연장과 하자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주요 추진실적

① 우리 협회에서는 기계설비분야의 시공상 하자발생 사례를 수년간 수집 연구하여 하자발생에 대한 시공대책을 책자(180쪽)로 발간하여 94년 초에 2천200 회원사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활용하므로써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고 하자발생시는 이에대한 처리대책을 제시하여 주므로써 공사원가 절감과 품질관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② 우리 협회는 공기조화냉동공학회,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 한국냉동공조기술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와 협의회를 구성(1986.8.)하여 매 분기별로 지금까지 32회에 걸쳐 공동연구, 기술교류로 시공업계, 학계,

자재업계의 협동체제 구축으로 기술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③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정부표준품셈의 신설 개정이 시급한 항목을 선정하여 91년부터 금년까지 닉트제작설치 등 57개 항목에 대하여 현장실사와 관계자료를 검토해서 정부에 건의하여 품셈의 합리화 개선을 추진하였다.

④ 설비공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건축공사에 포함, 일괄발주하는 제도를 건축공사에서 분리발주할 수 있는 제도로 하는 예산회계법시행령을 지난 6월 30일자로 개정 시행하므로써 예산절감과 견실시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⑤ 건설공사 감독자의 업무에 하도급의 공정한 집행을 절저히 점검하고 감독토록 하기 위하여 하도급 승인사항, 선금금, 기성금 등 공사대금의 기한내 지급여부 등을 공사감독관이 매월 확인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토록 하는 제도를 우리 협회에서 건의하여 지난 93년 12월 31일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⑥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및 성실시공 확립을 위한 간담회를 연 31회(참석인원 412명) 개최하였고, 부실공사 추방실천결의대회를 연 8회(참석인원 1,613명), 표준품셈(기계설비부문) 적용기법 및 성실시공 세미나 개최는 연 2회(참석인원 610명) 실시, 신공법 적용을 위한 자동화공장 및 현장견학(참석인원 600명)을 실시하므로써 기업경영혁신 및 시공능력 향상을 기하도록 지도하였다.

⑦ 우리 협회에서는 정기간행물인 「월간 설비공사」 잡지를 매월 4,000부 발간하여 신공법 해설, 기술인력관리, 공사현장 안전관리, 부실시공방지 계몽, 관계법령준수 해설 등 내용을 수록하여 설비 건설업계, 기자재 생산업계, 설계용역 업계에 정기적으로 홍보하여 오고 있다.

⑧ 우리 협회 각 시·도회별로 관내 설비공사 업체에게 94.7월부터 10월까지 학계 및 연

구기관의 교수 및 전문가를 초빙하여 부실시공방지 대책과 건설기술인의 사명감 고취를 위하여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협회장의 친서로 회원사 대표에게 신년사 및 중추절 인사문에서 성실시공 및 하도급부조리 예방을 위한 당부를 전달하였으며, 본회에서는 94년 6차에 걸친 총회, 이사회와 시도회의 매월 운영위원회의 개최시마다 하도급공정거래, 과다 경쟁저가수주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 등에 대한 토의 및 결의로 전체 회원사에 확산 이행토록 노력을 경주하였다.

■ 평가와 반성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우리 업계에서는 자체적으로 회원사와 기능인력에 대한 계도를 해오고 있으며, 정밀시공에 필요한 현장시공도 작성을 위하여 CAD용 컴퓨터 도입, 불량자재를 막기 위한 자재전시장 설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회원사의 홍보, 신기술 소개 등 우리 업계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으나 공사수주시의 과다경쟁, 하도급공사비의 이중계약, 물가연동제 미적용 등으로 인하여 적정공사비 확보가 되지 않아 업계 경영에 많은 애로가 있었으며, 따라서 성실시공에도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평가된다.

또한 중소업체에서 양성한 기술, 기능인력을 타업체에서 스카웃 해가는 사례가 빈번하여 기술인력 수급체계의 불안 등에 의해 현실적으로 성실시공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한편 시공현장의 기술인력이 성실시공의 식결여와 경영관리의 비효율, 미숙한 점은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고 자체 평가한다.

■ 향후 중점 추진과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향후 중점 추진과제는 우리 업계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부분과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제도적인 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 업계와 협회가 중점과제로 설정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① 정밀 시공을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현장시공도 작성을 추진하고 이를 회원사에 보

건설부는 교량 등 특수구조물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의해 정밀 안전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총리실에 「중앙안전점검통제단」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급하고, 신공법을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한다.

② 불량자재를 추방하기 위하여 협회내에 국가공인 자재시험소 개설을 추진하고 우수 자재를 공인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③ 적정가격 공사수주와 성실시공 의식개혁 확산을 위하여 저가수주, 저가하도급 강요 방지 운동을 적극 전개하며 기능인력의 대우 개선과 작업환경 개선운동을 강구하고 의식 개혁 홍보에 주력한다.

④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위하여 신공법을 적용할 수 있는 품셈을 개발하며, 하자사례집을 추가로 발간하고 선진외국의 신기술 도입 및 홍보를 지속한다.

제도개선 건의사항

① 하도급 이중계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서를 허위로 발주자에 통지할 경우 영업정지 등 벌칙을 강화토록 건설업법 개정이 요구되며, 하도급자가 이중계약을 신고할 경우 하도급자에게 피해보상 및 포상제도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고 이중계약여부를 감리, 감독자가 감시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이 요구된다.

② 원도급자가 저가수주한 경우에도 발주자가 요구하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하도급공사비가 책정토록 공사계약 일반조건 개정이 바람직하다.

③ 정부대외개방대상공사에서 제외되는 50 억 이하의 공사는 발주 예정가격의 85% 이상을 낙찰 기준선으로 하는 제한적 최저낙찰제도를 시행토록 예산회계법령이 개정되어야 한다.

④ 노임의 상승에 대한 공사비 결손을 방지하고 성실시공을 유도할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 적용시 노임과 자재를 분리 산정할 수 있도록 예산회계법령이 개정되어야 한다.

⑤ 건설업체의 공사현장에 투입된 기능인력을 그 사용주와의 협의없이 자기 공사 현장으로 스카웃해가는 업체는 공사방해, 부실시공 유발요인 제공자로 간주하여 불이익을 받도록 제도적으로 규제가 되어야 한다.

⑥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하여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대등하게 공사보증을 할 수 있도록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이 요구되며, 하도급계약서의 공증제도 도입이 있어야 한다.